



제 318 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도시교통위원회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6. 3. .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이상기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법령 범위를 초과하던 빗물이용시설 관련 규정을 정비·삭제하고, 중수도 설치 대상 및 관리 기준을 시행령에 맞게 재정비하는 한편,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와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상위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를 면적 기준만으로 규정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던 내용을 삭제함 (기존 제3조)

다. 중수도의 설치·대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기준에 맞게 시설물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개발사업 관련 규정은 삭제함 (안 제3조)

라. 상위법 개정 및 상위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기존 제10조~제16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하수처리과
- 라. 입법예고 : 2026. 3. 5. ~ 2026. 3. 10. (5일간)
- 마.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그 간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제3조와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중수도의 설치 대상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이 상이하기에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삭제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안 제3조에 문화 및 집회 시설과 의료시설 등 물 재이용 수요가 높은 시설군으로 중수도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와 관련된 현행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삭제하였는데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문이 2016년도에 물 재이용 정착 등으로 필요치 않아 삭제되었기에 우리 시 또한 개최 실적이 없고 존속의 필요성이 없기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본 조례안은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물 재이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5.>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 7. 1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및 상위법과 근거없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한 별도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고자 함.

### 4. 작성자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장 김윤곤